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 등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006. 4. 24(월)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업부담의 경감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04. 12월 법개정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한 사업관련성 요건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회사·손자회사의 주력사업 변경 등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한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현행 제한은 지주회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및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부채차입 등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무관한 자금 차입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 ▶합병·분할 등 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합병·분할

등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법(제393조의2)에 규정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하였다.

셋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에 해당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다.

넷째,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식(지분)취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지배목적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주식취득행위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였다.

다섯째, 민간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메커니즘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아울러 분쟁조정 업무도 개별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 의해 산발적·단편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통일적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을 규정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연수,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출판, 공



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하도급 및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시장·산업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 및 행태 조사·분석 등이

있다.

여섯째, 징수 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조항을 신설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5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보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안」 개정에 따른 보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다.

동 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되, 서류 제출에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고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며 ▶공제조합 정관 기재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별지 제1호(방문판매업신고서), 제5호(전화권유 판매업신고서), 제9호(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양식을 수정하고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규정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신고시, 서류 제출을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본지 부록(108면 이하) 참조.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협력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이들 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검찰 고발 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검찰 고발은 위원회 의결 사항임)함으로써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가 미등록 다단계판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등 조합을 통한 감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상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나 재화 등의 가격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이 위축될 우려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자율 감시망
을 벗어나 있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 등에 대한 피
해보상이 곤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
해 예방 장치인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도
누락되어 소비자피해 예방이 곤란 ▶재화의 가격

제한 기준, 후원수당 기준 등 다단계판매자(다단
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는 기업의
영속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탕주의 식으로 다단계
판매원 등의 돈을 받고는 약속대로 수당 등을 지
급하지 않고 폐업·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
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상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 법위반 행위를 사전예방하
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
로 하도급교육을 확대·상설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지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은 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주관으
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거 3년간 하도
급법 위반시 부과된 누적벌점에서 1점을 감점

2006.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6년 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
하여 2006년 5월 2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
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
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6년 4월중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6. 5. 2. 현재 466개로 전월
대비 3개가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을 제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6. 5. 2. 현재 658개로 전월
대비 4개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9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6. 4
월중 11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4개사가 계열제
외 되어 2006. 5. 2. 현재 1,124개로 전월대비
7개사가 증가하였다.

공정위 업무활동



〈2006. 4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6. 4. 14.	편 입					제 외					증감	2006. 5.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	463	3	2	-	5	2	-	-	-	-	-	2	3	466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9개)	1,117	8	3	-	11	3	-	-	-	-	1	4	7	1,124

〈2006. 4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1개사(회사설립 : 8, 지분취득 : 3)

◆ 제외 : 4개사(합병 : 5, 기타 : 1)

기업 집 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씨제이	(주)삼호에프엔지	원양어업	지분취득	씨제이이에치(주)	영화 등 제작	합병
	(주)좋은콘서트	광고업	지분취득	씨제이모닝웰(주)	식품소분 판매업	합병
	씨제이 엔터테인먼트(주)	영상물 제작업	회사설립			
하이트 맥 주	(주)석수와퓨리스	먹는샘물 제조	회사설립	-	-	-
	(주)퓨리스음료	먹는샘물 제조	회사설립			
효 성	효성윈드파워 홀딩스(주)	전력자원의 개발	회사설립	-	-	-
현 대 백화점	(주)현대드림투어	국제여행 알선업	회사설립	-	-	-
하나로 텔레콤	하나로미디어(주)	멀티미디어 서비스업	지분취득	-	-	-
농 심	(주)메가수산	농,수,축산물 가공제조	회사설립	-	-	-
태 영	(주)티와이스틸	철강제품 운송	회사설립	-	-	-
	(주)에코타운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회사설립			
현대산업 개 발	-	-	-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도로의 건설	기타
태 산 광 업	-	-	-	(주)한국케이블 티브이수원방송	종합유선 방송국 운영	합병